

2015. 7. 2.(목)
제1차 행정문화위원회

2014회계연도
충청북도세출예산예비비지출승인안
검 토 보 고 서
[행정국 소관]

행 정 문 화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한 철 우

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결산 [행정국 소관]

1. 총괄 <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결산서 P3, P8>

- 행정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6,000만원
으로 이 중 5,708만 8천원을 지출하고, 291만 2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음.

<표-1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내역>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지출결정액 ㉠	지출액 ㉡	이월액 ㉢	불용액 ㉣=㉠-㉡-㉢	불용률 ㉣/㉠
행 정 국	60,000	57,088	0	2,912	4.85
충청북도	2,656,398	2,647,725	0	8,673	0.33

-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, 2014년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
관련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제반 비용으로 6,000만원을
지출하였음.

<표-2 행정국 소관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내역>

(단위 : 천원)

사 업 명			지 출 결정액	지출액	이월액	불용액
분야	세부사업	통계목				
세월호 침몰사고 합동분향소 설치·운영			60,000	57,088	0	2,912
일반행정	도정업무수행시책추진	행사운영비	60,000	57,088	0	,2,912

2. 검토의견

- 예비비는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.
-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·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상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(지방재정법 제43조),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(지방교육세 세입액 제외)의 100분의 1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나
- 예비비는 보조금(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 제외),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고 (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)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
-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예산외의 지출이 필요하거나 물가변동으로 이미 확정된 예산으로는 도저히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이어야 하고 또한 소요되는 경비가 신속한 집행이 요구될 때 사용하여야 하겠음.
- 행정국 소관 예비비 사용은 2014년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기원하기 위해 충청북도 도청내 합동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6,000만원 예비비 편성하여 지출하였음.
이는, 세월호 침몰사고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기 위한 것으로써 예비비 지출목적에 적합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됨.